

#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정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80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3월 19일

발 의 자 : 김정환, 이광호, 이광성, 김태수  
최정순, 송정빈, 김기덕, 송명화  
김광수, 김생환, 양민규, 김경우  
유정희, 황인구, 김제리, 장상기  
이영실, 채인묵 의원 (18명)

## 1. 제안 이유

시민 건강피해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하고 있는 석면 슬레이트를 해체·제거·처리하고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면적에 따라 비용을 차등 지원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 조례에 지원비용 상한액이 명시되어 있어 건물 당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 증액되더라도 상한액 이상으로 지원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,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.

## 2. 주요 골자

가. 슬레이트 해체·제거·처리 및 지붕개량 비용 지원시 상한액 규정을 삭제함

(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)

### 3. 참고 사항

가. 관련 법령 : 「석면안전관리법」 제25조 및 제26조

나. 예산 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 조 제목 중 “해체·제거 및 처리”를 “해체·제거·처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해체·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”을 “해체·제거·처리 및 지붕개량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슬레이트 시설물의 <u>해체·제거 및 처리</u> 등 지원) ① 시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의 <u>해체·제거 및 처리</u>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의 슬레이트를 제거한 경우 사용 면적에 따라 최고 2백만원까지 지원하며, 지붕재를 해체·제거한 경우에는 지붕개량면적에 따라 최고 3백만원 범위 안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	<p>제12조(슬레이트 시설물의 <u>해체·제거·처리</u> 등 지원) ① ----- ----- <u>해체·제거·처리 및 지붕개량</u>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----- -----.</p> <p>〈삭제〉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
#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 조 제목 중 “해체 제거 및 처리” 를 “해체제거처리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” 을 “해체제거처리 및 지붕개량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
- 현행 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라 시장은 지붕재(슬레이트)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최고 2백만원까지, 지붕재를 개량할 경우에는 최고 3백만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던 것을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경우 현행 조례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함.
  - 환경부의 ‘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’ (2019.1)에서는 슬레이트 철거 시 국비를 가구당 168만원, 개량 시 151만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면서 지방비는 국비 지원금액 이상으로 지원토록 지침이 시행됨에 따라,
  - 슬레이트 철거 시 국비가 168만원이 지원되면 지방비도 168만원 이상이 지원되어야 하지만, 현행 조례의 지원금 상한액 규정에 의거 2백만원까지만 지원되어 지침 위반이 되고
  - 슬레이트 지붕개량 시 가구당 국비 151만원이 지원되면 지방비도 151만원 이상 지원되어야 하지만, 현행 조례의 지원금 상한액 규정에 의거 3백만원까지만 지원되어 지침 위반됨에 따라 현행 상한액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
- 첨부 : 환경부 지침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### 3. 미첨부 사유

- 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(제3조제1항제1호)

나. 추계결과

○ 총 비용 ≒ 172,500천원(연 평균 34,500천원)

(단위: 천원)

구분	내용 및 조항	1차년도 (2019)	2차년도 (2020)	3차년도 (2021)	4차년도 (2022)	5차년도 (2023)	합계
세출	지원금 상한액 조항 삭제 (제12조 2항)	34,500	34,500	34,500	34,500	34,500	172,500

다. 비용추계 전제

- 환경부 ‘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(2019.1)’ 은 향후 5년 동안 변동 없는 것으로 전제하고, 서울시 또한 국고보조금 지원금액에 맞춰 50:50(국비:시비) 비율로 지원한다고 전제
- 서울시 내 슬레이트 건축물 중 최근 3년 동안 제거한 평균 실적 25가구를 향후 5년 동안 매년 교체한다고 가정

구분	17년	18년	19년	평균
제거실적(가구)	26	23	26	25

※ 자료 : 기후변화대응과

-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은 같이 발생한다고 가정

라. 비용추계 산식

○ 슬레이트 제거 및 지붕개량 비용 ≒ 34,500,000원

- 슬레이트 제거 비용 = 34,000,000원

▶ 1가구 당 제거비용 추가액(1,360,000원) × 지원대상(25가구) = 34,000,000원

※ 당초의 슬레이트 제거 지원금은 가구 당 2,000,000원이나 개정안으로 지원 시 3,360,000원으로 1,360,000원 추가 비용발생

- 슬레이트 지붕개량 비용 = 500,000원

▶ 1가구 당 지붕개량비용 추가액(20,000원) × 지원대상(25가구) = 500,000원

※ 당초의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금은 가구 당 3,000,000원이나 개정안으로 지원 시 3,020,000원으로 20,000원 추가 비용발생

##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예산정책담당관

담    당    관      남승우

예산분석팀장      정한섭

주    무    관      박경순

☎ 02-2180-7933

e-mail : kssunbi@seoul.go.kr